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61호)

2026.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개정안의 내용 .....             | 3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          | 3 |
| 가. 법정형의 헌법적 기준에 관한 일반론 ..... | 3 |
| 나. 공공장소 질서방해행위의 규제 개요 .....  | 4 |
| 다. 검토의견 .....                | 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기표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5. 11. 10.
3. 회 부 일: 2025. 11.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 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i) 확성기 등을 사용한 소음 발생행위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제1항제1호), ii) 방송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제1항제2호)로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공장소 질서방해죄’를 신설하고, iii)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u>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 ①</u> <u>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광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u>확성기, 악기, 고성 등을 사용하여 소음 발생행위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u></p> <p>2. <u>방송·영상 촬영,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u></p> <p><u>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p> |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소음 발생행위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하여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공공장소 질서 방해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공공장소 질서위반행위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고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임.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가. 법정형의 헌법적 기준에 관한 일반론

법정형의 입법 분야에서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상의 지침으로는 비례원칙, 형벌체계 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 명확성원칙을 들 수 있음.<sup>1)</sup>

i) 비례원칙은 법정형을 포함한 형사입법의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투입된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입법을 통하여 투입하는 수단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투입하는 수단이 국민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입법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의 가치와 법익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균형성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함.<sup>2)3)</sup>

---

1) 이진국, 합리적 법정형의 입법 방안, NARS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16쪽

2) 이진국, 앞의 글, 16쪽

3)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

ii) 형벌체계 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sup>4)</sup>은 법정형을 가중하는 입법의 경우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서는 아니되며,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함.

특히, 형사입법에서는 균형성 원칙이 행위규정과 제재규정 간의 비례관계를 심사대상으로 삼게 되며, 입법자가 신설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범죄구성요건에서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정형이 비례관계에 서 있는지가 균형성 원칙의 심사대상으로 됨.<sup>5)</sup> 객관적으로 법정형을 범죄의 추상적 불법성에 비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법정형에 대한 균형성 원칙의 요청에 위반될 경우 책임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된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됨.<sup>6)7)</sup>

## 나. 공공장소 질서방해행위의 규제 개요

개정안에 따른 공공장소 질서방해행위 중 소음 발생행위와 관련하여서는 i) 「경범죄처벌법」<sup>8)</sup>에서 인근소란행위를 경범죄로 처벌

---

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4)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5) 이진국, 앞의 글, 23쪽

6) 이진국, 앞의 글, 24쪽

7)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지 아니하고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며(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이에 위반되는 법정형을 규정한 조항은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8) 「경범죄처벌법」

할 수 있음. ii) 「소음·진동관리법」<sup>9)</sup>에서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고정 설치된 확성기 등에 의한 소음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형 확성기로 이동소음을 발생한 경우에 과태료로 처벌함.

개정안에 따른 공공장소 질서방해행위 중 통행방해행위와 관련해서는 i) 「경범죄처벌법」<sup>10)</sup>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함. ii)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sup>11)</sup> 등에서는 시설물 등의 설치와 같은 점용행위를 허가를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9)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10)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⑤ (생략)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나, 일시적인 사용행위는 점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iii) 「형법」 12)은 도로 등의 손괴 또는 불통(不通)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히 소통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13)

### <공공장소 질서방해행위 관련 법정형 비교>

| 구분       | 구성요건                                                                                                                             | 처벌                     |
|----------|----------------------------------------------------------------------------------------------------------------------------------|------------------------|
| 개정안      | 다음 각 호 행위로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 or 공공의 안녕질서 해한 자<br>i) 확성기 등 소음 발생행위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제1호)<br>ii) 방송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경범죄처벌법」 | 불안감조성·인근소란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속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2)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례 참조

| 구분                   | 구성요건                      | 처벌                                 |
|----------------------|---------------------------|------------------------------------|
| 「소음·진동 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 이동소음 규제지역 위반              |                                    |
| 「도로법」                | 점용허가 없는 도로점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점용허가 없는 공원점용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 육로 등의 손괴·불통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직선거법」 14)          |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 | 소음 기준 초과 시 경찰서장의 명령·조치 위반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개정안의 공공장소 질서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sup>16)</sup> 프랑스<sup>17)</sup>, 일본<sup>18)</sup> 등은 질서위반행위, 위경죄(偽經

#### 14)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파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 16) 「독일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

제117조(허용되지 않은 소음) (1)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허용되지 않거나 주위 정황 상 피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일반 공중이나 이웃을 현저하게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질서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최대 5,000유로의 과료로 처벌

罪)<sup>19)</sup> 또는 경범죄로 벌금이나 과료로 처벌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시위나 집회 시의 소음은 주로 주법이나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데,<sup>20)</sup>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90일 이하의 구금형 또는 400달러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음.<sup>21)</sup>

##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확장장치에 의해 기계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소음 등으로 일반 국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sup>22)</sup> 공공장소에서의 소음과 통행 방해로 사회의

---

할 수 있다.

제118조(일반 공중에 대한 괴롭힘) (1) 일반 공중을 괴롭히거나 위태롭게 하여 공공질서를 해할 수 있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이 질서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

### 17) 「프랑스 형법」 Code pénal

제R. 623-2조(소음) ① 부당하게 또는 야간에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평온을 해한 자는 제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략)

제R. 644-2조(도로교통의 방해) ① 필요 없이 통행의 자유 또는 안전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물질이나 물건을 도로상에 두거나 방치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131-13조(위경죄 벌금형의 액) 범률이 3,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는 위경죄를 구성한다. 벌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제3급 위경죄에 대하여 450유로 이하

4. 제4급 위경죄에 대하여 750유로 이하

### 18) 「일본 경범죄법」

제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 타인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그 신변에 균질하여 물러서지 아니하거나 불안·불쾌를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따라다닌 자

19) 위경죄(abertretung, 違警罪)는 범죄분류의 하나로서, 프랑스 등에서 구류나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를 의미함. 우리나라에는 법제상으로는 학설상으로 그러한 분류법이 없으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와 각종 행정법규상의 가벼운 범죄 등이 위경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0) 김주영, 미국의 소음규제 및 표현의 자유,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 한국법제연구원, 4쪽

### 21) 「미국 캘리포니아 형법」

제4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90일 이하의 구금형(imprisonment) 또는 400달러 이하의 벌금(fine)에 처하거나 구금형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시끄럽고 부당하게 소음으로 타인을 방해한 자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공공장소 질서방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음.<sup>23)</sup>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장소 질서방해죄를 신설할 것인지는 형법의 보충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형사 입법을 함에 있어 그 실효성의 면을 강조할 경우 과잉규제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바, 형벌은 최후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최후수단성 또는 보충성의 원칙에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은 규제되는 행위 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을 정할 때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sup>24)</sup>

특히,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확성기를 이용한 행위나 영상 촬영행위가 기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예술적 표현의 자유, 예술활동의 자유의 범위에서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sup>25)26)</sup> 기존에 경범죄로 규율되던 과도한 정치적 또는 예술적 표현행

22)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결정례

23) <최근 5년간 인근소란행위 관련 경범죄 처벌법 범칙금 통고처분 현황>

| 위반행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인근소란 | 6,421 | 4,237 | 3,190 | 2,830 | 2,280 |

통계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통계자료

24) 이진국, 합리적 법정형의 입법 방안,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3쪽

25) 이장희,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 법제연구 제55호(2018), 한국법제연구원 9쪽

26) 현재 개정안의 입법배경이 된 유튜브 등 미디어 촬영행위와 관련하여, 유튜버 등 디지털크리에이팅세한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관련 제작물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87호,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제2209306호,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및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위나 예술활동에 대해 「형법」상의 공안(公安)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공공장소 질서방해죄의 법정형이 책임에 상응하는지에 대해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범죄구성요건에서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정형이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공장소 질서방해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 흥기소지죄’<sup>27)</sup>와 동일하게 처벌하는데, 공공장소에서의 소음발생행위와 통행방해행위가 공공장소에서 흥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준하는 불법성을 가진 범죄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공장소 질서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sup>28)</sup> 방해”, “공공의 안녕질서<sup>29)</sup>를 해한 자”,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정도의 소음발생행위와 통행방해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

---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1174호,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임.

27)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흥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례 참고(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등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판시. 다만, 한정합헌으로 결정)

29)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례 참고(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급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

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sup>30)</sup>의 측면에서 공공장소 질서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생활소음에 비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음발생행위와 지속적·반복적 통행방해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칠 수 있는 공공장소 질서방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형사처벌 행위를 신설하려는 입법 취지임.

다만, 표현의 자유 및 예술적 표현의 자유, 예술활동의 자유의 범위와 관련될 수 있는 행위를 「형법」상의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공장소 흥기소지죄’에 준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형법의 보충성 측면과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의 측면에서 공공장소 질서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56 |

30)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등 참조).